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12

발의연월일: 2024. 8. 26.

발 의 자:한정애·조 국·민홍철

이학영 • 박희승 • 주철현

문진석 · 송옥주 · 한준호

이병진 • 이성윤 • 박지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 또는 모가 체포·구속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그 부모를 둔아동은 가족 해체로 인한 보호자의 부재와 그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남겨진 자녀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포 및 구속·구인 등 부모와 분리되는 즉시 아동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 특히 시장·군수·구청장 이의외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체포·구속한 피의자에게 자녀가 있는지와 그 자녀가 피의자의 체포·구속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자녀가 있는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보호대상아동으로 확인되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1 신설).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1장에 제24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5조의11(피의자 자녀의 보호대상아동 여부 조사 및 보호조치 의뢰의 특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자녀가 있는지와 피의자의 체포·구속에 따라 그 자녀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서 피의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고, 필요한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피의자 체포· 구속에 따라 피의자의 자녀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하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 다.
 - ④ 제2항에 따른 자료 협조의 절차와 방식,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의 절차와 방식, 그 밖에 피의자 자녀의 보호대상아동 여부 조 사 및 보호조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의자 자녀의 보호대상아동 여부 조사·보호조치 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포·구속되는 피의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u 설=""> 제245조의11(피의자 자녀의 보기 대상이동 여부 조사 및 보기 기의의 특례) ① 검사 되지 기의자를 제외 기의자를 제외 기의자를 제외 기의자의 기의자의 기의자의 기의자의 기의자의 기의자의 기의자의 기의자</u>
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미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계획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의자신문에서 피의자에게 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자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된 장에게 자료 협조를 요청할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경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외에 따라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2항에 따른 확인결과 피역체포·구속에 따라 피의경

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15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료 협조의 절차와 방식,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의 절차와 방식, 그밖에 피의자 자녀의 보호대상 아동 여부 조사 및 보호조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